

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설되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책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,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신설

(안 제9조제1항 및 별표 2)

나.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에 관한 내용 삭제(안 제9조제6항)

다.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반입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처리시설”을 “공공처리시설”로, “반송 및”을 “반송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가축분뇨”를 “가축분뇨인 경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행규칙으로 하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용료를 포함한다”를 “별표 2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있다.”를 “있으며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,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게 제출하고,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자”를 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”로, “때마다”를 “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공공처리시설의 관리·운영자는”으로 한다.

별표 2와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처리시설</u> 로 반입을 거부, <u>반송 및 처리대상 배출시설</u> 에서 제외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별표 1에서 정하는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<u>가축분뇨</u>	제5조(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) ----- ----- <u>공공처리시설</u> ----- <u>반송하거나</u> ----- ----- 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가축분뇨인 경우</u>
제9조(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) ①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<u>시행규칙</u> 으로 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용료를 포함한다. ② 가축분뇨 수집·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9조(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별표 2와 같다.</u>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있으며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신청인에게 교</u>

③ ~ ⑤ (생 략) ⑥ <u>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</u> <u>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</u> <u>료는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</u> <u>례」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</u> <u>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</u> <u>장 사용료 규정에 준용하여 납</u> <u>부한다.</u> 제10조(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 수방법 등) ① (생 략) ② <u>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자</u> <u>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</u> <u>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</u> <u>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</u> <u>유지하여야 한다.</u> ③ (생 략)	<u>부하고,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</u> <u>관리·운영자에게 제출하고, 1</u> <u>매는 보관하여야 한다.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제10조(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 수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는 자-----</u> <u>---- 때마다 별지 제3호 서식</u> <u>에 따라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</u> <u>야 하며, 공공처리시설의 관리·</u> <u>운영자는 ----.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[별표 2]

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
(제9조제1항 관련)

시 설 별	부과기준	계	수집·운반 수수료	공공처리시설 사용료
허가대상	1ℓ	33원	8원	25원
신고대상	1ℓ	28원	8원	20원
신고미만	1ℓ	18원	8원	10원

영수증(제9조제2항 관련)

(앞면)

(대행업자 보관용)

(처리장 제출용)

(신청인 교부용)

NO :				
가축분뇨반입신고서				
수 집 처	주소	구미시 읍.면 리		
	상호 (성명)	()		
수거량(kℓ)				
축사규모		계	수 집 운 반 수수료	처리장 사용료
허가, 신고, 신고미만				
영수액(원)				
수거일시		년 월 일		
차량번호				
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. . . 대행자 (인)				

NO :				
가축분뇨반입신고서				
수 집 처	주소	구미시 읍.면 리		
	상호 (성명)	()		
수거량(kℓ)				
축사규모		계	수 집 운 반 수수료	처리장 사용료
허가, 신고, 신고미만				
영수액(원)				
수거일시		년 월 일		
차량번호				
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. . . 대행자 (인) 구미시장 귀하				

NO :				
가축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				
수 집 처	주소	구미시 읍.면 리		
	상호 (성명)	()		
수거량(kℓ)				
축사규모		계	수 집 운 반 수수료	처리장 사용료
허가, 신고, 신고미만				
영수액(원)				
수거일시		년 월 일		
차량번호				
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. . . 대행자 (인)				

(뒷면)

□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용 안내

- 위탁처리 할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의
유입기준을 초과하거나 고액분리되지 않은
경우,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제한합니다.
- 수집·운반 수수료 : 8,000원/kl
- 공공처리시설 사용료
 - 허가대상 : 25,000원/kl
 - 신고대상 : 20,000원/kl
 - 신고미만 : 10,000원/kl
-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 사항이나
부당요금을 요구할 경우 구미시청 환경
보건과(☎480-526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관계법령

□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26조(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·처리 및 비용 부담 등)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·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수집·운반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~ ④ 생략

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,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⑥ ~ ⑦ 생략

소 관 부 서		환경보전과
입 안 자	과 장	우 준 수
	담 당	엄 승 진
	담 당 자	정 한 울 (480-5269)